

「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」 일부개정 계획 보고

□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개요

- 구 성 : 5개 시·도(서울, 경기, 인천, 강원, 충북)
 - 한강 유역의 5개 시·도를 중심으로 '99년 설립된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에 따른 '행정협의회'
- 목 적 :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홍보,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 도모
- 운 영 : 5개 시·도가 윤번제로 사업 주관

연 도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주 관	경기	인천	강원	충북	서울	경기	인천	강원

※ 협의회장 : 간사 시·도 담당국장

- 재 원 : 사업예산(각 시·도별 균등 분담/50백만원) 및 전년도 이월금

□ 추진배경

- 강원특별자치도 출범('23.6.11.)에 따른 변경사항(명칭) 반영
- 협의회 구성 근거인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13.)에 의한 근거조항 수정 등

□ 주요변경 내용

※ 개정(안) 및 신규조문대비표 붙임

-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(강원도) 명칭 변경
-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 개정에 따른 협의회 근거 조항 수정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→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
- 정기회 개최 횟수(연 1회 → 연 2회) 수정 등 ※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100조

□ 향후계획

- 규약 변경 사항 고시 : '23. 9.
- 고시 결과 통보(서울시 → 강원도) : '23. 9.
- 규약 변경 결과 보고(강원도 → 행안부·문체부) : 5개 시·도 고시 완료 후

- 붙임 1. 「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」 일부개정(안) 1부
2. 「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」 현행 및 개정 본문 각 1부

작성 자 | 관광정책과장: 조성호 ☎ 2133-2805 | 관광협력팀장: 함혜정 ☎ 2814 | 담당: 김세별 ☎ 2819

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전문 중 “강원도”를 “강원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”를 “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강원특별자치도

제5조제2항 중 “강원도”를 “강원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강원도”를 “강원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연1회 매년 상반기”를 “연 2회 매년 상·하반기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73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전문, 제2조, 제5조,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성)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강원도

5. (생략)

제5조(조직) ① (생략)

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,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, 경기도 관광담당국장, 강원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으로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6조(회장) 본 협의회 회장은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,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, 경기도 관광담당국장, 강원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 순의 윤번제로 한다.

① ~ ③ (생략)

제7조(회의개최) ① (생략)

② 정기회의는 연1회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9조(협회사항의 조정)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에

제2조(구성)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강원특별자치도

5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 강원특별자치도 -----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회장) -----

----- 강원특별자치도 -----

-----.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회의개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연 2회 매년 상·하반기 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협회사항의 조정) -----

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73조----

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12조(경비부담 및 집행) ① (생략)

②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경비 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」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.

-----.

제12조(경비부담 및 집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-----.

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는 수도권관광산업이 지역발전의 성장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, 복합적인 산업자원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외국관광객의 기호와 주5일 근무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 등 관광 여건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관광 상품의 개발 등을 통해 이 지역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.

제1조(목적) 본 규약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증가, 주5일제 근무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관광진흥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
2. 인천광역시
3. 경기도
4. 강원도
5. 충청북도

제3조(사업추진) 본 협의회는 5개시도가 윤번제로 사업을 추진한다.

제4조(처리사무) 본 협의회는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관광상품의 지역 연계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·행사 참여 등 교류활동 전개
3. 수도권 5개시도 관광상품의 국내·외 홍보를 위한 관촉활동에

대한 사항

4. 지방자치 단체별 관광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대한 사항

5. 그 밖에 협의회 협의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,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, 경기도 관광담당국장, 강원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으로 한다.

③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둔다.

④ 간사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담당과장이 되며, 회의 운영의 기록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.

제6조(회장) 본 협의회 회장은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,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, 경기도 관광담당국장, 강원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 순의 윤번제로 한다.

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개최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1회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한다.

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,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한다.

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 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 결과를 관계 위원과 각 시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의결과 처리) 본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의사항의 조정)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협의방법) ① 위원은 협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개최를 요구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②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며,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·표결 권한을 부여한다.

제11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,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담당 과장과 안전관련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.

② 회장이 속하였거나 회의를 소집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업무담당 과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되고,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전 중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.

제12조(경비부담 및 집행)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“수도권 관광진흥 공동사업”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·도에서 부담할 수 있다.

②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경비 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.

제13조(사무인계인수)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.

제14조(규약개정) 회원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하면 본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.

제15조(보칙)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 울 특 별 시 장
인 천 광 역 시 장
경 기 도 지 사
강 원 도 지 사
충 청 북 도 지 사

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특별자치도, 충청북도는 수도권관광산업이 지역발전의 성장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, 복합적인 산업자원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외국관광객의 기호와 주5일 근무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 등 관광 여건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관광 상품의 개발 등을 통해 이 지역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.

제1조(목적) 본 규약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증가, 주5일제 근무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
2. 인천광역시
3. 경기도
4. 강원특별자치도
5. 충청북도

제3조(사업추진) 본 협의회는 5개시도가 윤번제로 사업을 추진한다.

제4조(처리사무) 본 협의회는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관광상품의 지역 연계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축제·행사 참여 등 교류활동 전개
3. 수도권 5개시도 관광상품의 국내·외 홍보를 위한 판촉활동에 대한 사항

4. 지방자치 단체별 관광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대한 사항
5. 그 밖에 협의회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.

- ② 협의회는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,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, 경기도 관광담당국장, 강원특별자치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으로 한다.
- ③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둔다.
- ④ 간사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담당과장이 되며, 회의 운영의 기록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.

제6조(회장) 본 협의회 회장은 서울특별시 관광담당국장, 인천광역시 관광담당국장, 경기도 관광담당국장, 강원특별자치도 관광담당국장 및 충청북도 관광담당국장 순의 윤번제로 한다.

-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- ②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③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개최)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매년 상·하반기 중에 개최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,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한다.
-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 마다 협의회 안전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 결과를 관계 위원과 각 시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의결과 처리) 본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의사항의 조정)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73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협의방법) ① 위원은 협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은 실무협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개최를 요구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②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며,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·표결 권한을 부여한다.

제11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, 실무협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담당 과장과 안전관련 과장을 위원으로 한다.

② 회장이 속하였거나 회의를 소집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업무담당 과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되고, 위원장은 협의안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전 중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.

제12조(경비부담 및 집행)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“수도권 관광진흥 공동사업”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

시·도에서 부담할 수 있다.

②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경비 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른다.

제13조(사무인계인수)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.

제14조(규약개정) 회원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하면 본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.

제15조(보칙)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전문, 제2조,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서 울 특 별 시 장

인 천 광 역 시 장

경 기 도 지 사

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

충 청 북 도 지 사